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결정사안】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본을 왕래하며 재일(在日)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신복영은 불가지 혐의로 신귀영, 서성칠은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신복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부산시경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재일 신수영과 신○○이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한국에 사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 내사(內査)를 벌였으며,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工作計劃)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에 착수(着手)하여 피해자들을 1980. 2.~3.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하여 5. 2.~5.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각 39일 내지 67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을 차단한 채 고립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하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造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부산지검은 부산시경에서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산시경에서의 자백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절차만을 거친 채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다.

4.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어 허위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보강증거도 없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구고법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각 기각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5.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500·502·504·506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

【신청인】 신귀영 외 3인

【결정일】 2007. 1. 23.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 요지

피해자 신귀영, 서성철, 신춘석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본을 왕래하며 재일(在日)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피해자 신복영은 불고지 혐의로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부산지검에 송치, 1980. 5. 기소되어, 부산지법에서 1980. 10. 15. 신귀영, 서성철은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신복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복역한 후, 신귀영은 1995. 6. 27. 만기출소, 서성철은 1989. 5. 8. 형집행정지로 출소, 신춘석은 1990. 6. 10. 만기출소하였는 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판결요지

가. 신귀영

1965.부터 일본 조총련 간부인 친형 신수영 부부를 만나 복귀의 선전 및 교양을 받고 입북권유를 받는 등 교류를 하다가,

- ① 1970. 12. 부산항에서 화영호 선원으로 도입하여, 신수영으로부터 부대촬영 필름을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일화 20만 엔을 받고 1971. 1. 27. 화영호 편으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잠입하고,
- ② 1971. 3. 미(美)하야리아 부대 후문 전경 및 군수기지 사령부 전경을 촬영한 필름을 1971. 5.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③ 1974. 7. 신수영을 만나 경부고속도로, 부산항, 해병대 병력 등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 ④ 1974. 10. 신수영을 만나 노동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5만 엔을 수수하고, 부산시가 지도 입수와 고리발전소 탐지 등 지령을 받아 잠입하고,
- ⑤ 1976. 10. 부산시가 지도, 부산시 전화번호부 등을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⑥ 위 일시에 신수영으로부터 포항시가 지도 구입, 호영이를 데리고 오라 등 지령을 받고,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하고, 잠입하고,
- ⑦ 1979. 5. 한정도를 만나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정보를 들어 탐지하고,
- ⑧ 1979. 9. 신수영으로부터 친목계 조직 등 지시를 받고, 3만 엔을 수수하고, 잠입하였으며,

나. 서성철

- ① 1968. 7. 장인 신정린가(家)에서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수영에게 해군복무시 승선했던 함정 등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 ② 1970. 8. 신수영에게 부산 시내 군사시설의 위치, 종류 등을 제보하여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 ③ 위 일시에 신수영으로부터 군수기지 사령부 등 사진촬영 지시를 받고, 3만 엔을 수수하고, 1970. 12. 부산항에 입항하여 잠입하고,
- ④ 군수기지 사령부 전경 등을 촬영하여 1971. 5.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⑤ 1971. 5. 신수영으로부터 해운대 탄약부대 등 수집 지령을 받고, 1971. 9. 부산항에

입향하여 잠입하고,

- ⑥ 부산부두의 경비상황 등을 수집한 후, 1971. 9. 신수영에게 제보하고,
- ⑦ 1971. 9. 신수영으로부터 항만시설 지도 등 수집 지시를 받고, 1972. 4. 부산항에 입향하여 잠입하고,
- ⑧ 1972. 4. 광복동 1가 15번지 근학서점에서 부산시가 지도, 항만시설 지도가 첨부된 책 등을 구입한 후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⑨ 1973. 8.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으로부터 부산시 전화번호부 등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5만 엔 수수 후, 동년 10. 대구 군용기지에 도착하여 잠입하고,
- ⑩ 1976. 9. 신수영에게 부산시 전화번호부를 제공하고,
- ⑪ 1977. 6.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으로부터 신덕영과 신혁영의 주소를 알아오라 등 지시를 받고, 3만 엔을 수수, 회합하고,
- ⑫ 1977. 11. 신수영과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하고,
- ⑬ 1978. 2. 신수영으로부터 실업자 포섭 등 지시를 받고,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하고,
- ⑭ 1978. 5. 신수영으로부터 혼란시 봉기 등 지시를 받고, 회합하고, 3만 엔을 수수, 5. 22.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잠입하였고,

다. 신춘석

1963. 3. 사춘형 신정린가를 방문하여 오촌 조카 신수영으로부터 부산시가 지도 수집 등 지령을 받은 후, 부산시가 지도를 신수영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해오다가,

- ① 1965. 5. 신수영으로부터 부산 주둔부대 사진촬영 등 지시를 받고, 1966. 6. 박○○를 대동, 육군 탄약창고, 부산 소재 군부대 등을 촬영하여, 동년 7. 신수영에게 제공하고,
- ② 1966. 7.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으로부터 선동 등 지시를 받고 부산항으로 귀향하고, 1967. 9. 포섭 및 봉기 등 지시를 받고, 5만 엔 수수 후, 부산항으로 귀국하여 잠입하고,
- ③ 신용석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1976. 6. 신용석이 보낸 10만 원, 금반지 3개 등을 받는 등 4회 금품을 수수하였고,



라. 신복영

- ① 친형 신수영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신수영이 보내는 한화 58만 원을 수수해 오다가, 1976. 2., 1977. 1., 1978. 1., 3회 금품을 수수하고,
 - ② 1979. 10. 5. 신귀영이 신수영을 계속 접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하고 있다는 점을 듣고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신귀영, 신춘석, 피해자 서성칠(사망)의 딸 서영실, 신복영(사망)의 아들 신성호는 2006. 1. 10. 진실화해위원회에 아래 의혹사항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피해자 신귀영은 1980. 2. 25.에, 신복영은 2. 27.에, 서성칠은 3. 7.에, 신춘석은 3. 24.에 각각 강제연행된 후, 1980. 5. 2. 및 5. 3.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40여 일 내지 70여 일 동안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고문, 가혹행위 여부

위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3.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한 것으로 지목된 신수영은 조총련 간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령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III.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등을 의미하며, 또한 확정판결 사건인 경우에는 기본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확인된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와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6. 5. 26.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건 신청서 등 검토를 거쳐 부산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MBC『시사매거진 2580』방송 보도 VTR 녹화테이프를 재생·분석한 후,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를 실시하였다.

1. 자료조사

- 부산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재심기록 10권 5851쪽

부산시경의 수사착수 경위 및 수사과정, 피해자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부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1차 및 2차 재심 증거 및 결정이유를 파악하였다.

- MBC『시사매거진 2580』방송 보도 VTR 녹화테이프 2건

당시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변복 이유 등을 파악하였다.



2. 진술청취

피해자 및 신청인 4명, 당시 참고인 및 증인 7명, 수사관 6명에 대해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이유 및 임의성과 신빙성 유무, 증언변복 이유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V. 조사 결과

1. 시대적 배경

이 사건이 발생한 1980년 전후 시기는 5·16 쿠데타로 출범하여 18년간 지속되었던 1인 장기집권이 불의의 사건으로 갑작스레 종식되면서, 새로운 체제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표출되었던 격동의 시기였다. 10·26 직후부터 유신체제의 조속한 청산과 민주사회 수립을 원하는 사회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유신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반대, 거국민주내각 구성, 학원민주화, 노동악법 개정 및 민주노조 결성 등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이 때부터 사실상 정권을 통제,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이러한 사회 격변기의 와중에 발생하였다. 1980년대는 간첩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남파 간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월북친척, 남북귀환어부, 외국방문자, 재일동포와 관련한 간첩 사건이 양산되는 특징을 띠게 된다. 이 시기에 발생한 간첩 사건의 또다른 특징은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부류로서 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존재들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간첩행위 관련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채 대부분 자백이나 진술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발생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 또한 사회적 약자인 외향선원들이 1960, 70년 시기에 승선 선박이 일본 항구에 정박중일 때 조총련계 친지를 만났다는 것을 빌미로 1980년 초 자백에 의존하여 간첩죄로 처벌한 사례로서 1980년대 간첩 사건이 갖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신수영, 신복영, 신귀영은 신정용의 아들로 신춘석의 오촌 조카들이다. 서성철은 신수영의 사촌 처남이면서 신정린의 사위이다. 신혁영과 신호영은 신정용과 친형제인 신정구의 아들, 신주석과 신용석은 신춘석의 친형제이다.

신수영 등의 부 신정용은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국하였고, 신수영은 1946. 1.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찌(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거주하다가 1968. 8.경부터 현재까지 지바(千葉)현 지바(千葉)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당시 신복영은 농업, 신귀영, 신춘석, 서성철은 외항선원을 하고 있었다. 신수영과 그의 삼촌 신정린은 조총련계이고, 신정린의 사촌형제인 신주석, 신용석은 민단계이다.

3. 수사 및 재판과정

가. 수사착수의 경위

이 사건은 1975. 6. 중앙정보부 발행의 조총련 인물록 중 신수영 및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는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즉, 부산시경 대공분실은 1978년 초부터 신수영과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는 위 인물록을 근거로 원양어선 선원으로 일본에 입항할 때 그의 형인 신수영을 만난 일이 있는 신귀영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즉, 부산시경 수사관은 1978. 2. 24. 신귀영이 1974. 5.~1975. 3. 승선한 태영상선 소속 남방호의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를 입수하였고,¹⁾ 1978. 12. 15. 부산시경 국장에게 신귀영이 1974. 8. 및 1975. 6. 2차에 걸쳐 일본 거주 조총련계 인사를 자신의 처남으로 가장하여 접선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보고를 하였으며, 1978. 12. 18. 신귀영의 조부 신윤규, 부 신정용 등의 제적부 및 호적부를 입수하였고,

1979. 2. 22. 부산시경 국장에게 “내사한 결과 대상자가 제일 조총련 신수영을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간첩 등 추가 범증 확보를 위해 공작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작평가보고를 한 결과를 보면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신귀영을 연행하여 자술서 및 제1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추궁하였으나, “신수영, 신정린을 만났다”는 점만 확인하고 간첩협의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1) 부산시경 1978. 2. 24.자 수사보고.



경은 1979. 4. 27. 내무부장관에게 “신수영, 신정린의 조총련 가입 여부, 현재 활동상황”에 대한 대일 사실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79. 7. 21.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신정린은 동춘지부 소속 분회원으로 과거 조직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노환으로 표면 활동이 없고, 동인의 집에 한국 선원이 출입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가족이 조총련계이며, 동인의 과거 조총련 활동으로 보아 외항선원을 접촉, 포섭하여 밀항권유 및 적성 언동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조사를 의뢰한 신수영은 소재 불명으로 조사불능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신정린,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경은 1979. 5. 1. 선원 이현수로부터 신귀영이 신수영, 신정린 등과 접촉한 내용 및 신귀영이 간첩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진술서를 받고, 1979. 7. 6. 내무부장관에게 “신귀영, 신혁영, 신복영, 신덕영 등에 대한 ‘가’급 공작 상신”이라는 공작평가보고를 하였다.

보고 결과, 1979. 7. 27.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상신한 공작을 승인하며 종합공작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명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시금 부산시경은 1979. 9. 19. 내무부장관에게 “대상자 신귀영, 신혁영, 신복영, 신덕영 등 특이동향 전무하나 11월중 승선중인 망원이 귀국 보고시 이들의 동향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다음,

간첩협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0. 1. 4. 또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본건 공작추진 결과 대상자들의 회합통신 및 금품수수 등 정황은 인정되나 간첩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치 않으면 조사불능 상태이고, 남과 간첩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수망을 투입, 감시타가 각 대상자들의 특이동향이 없으면 직접 조사토록 하겠다며 조정을 요청한다”는 수사공작 종합보고를 하였다.

보고 결과, 1. 30. 치안본부장으로부터 “공작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승인하니 수사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경 수사관들은 중정 조총련 인물록에 기재된 신수영과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신수영과 신정린의 친척인 신귀영, 서성철, 신복영 등에 대해 내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간첩협위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승인된 공작계획에 의거 조직적으로 신귀영, 서성철, 신춘석, 신복영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들을 강제연행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부산시경의 수사과정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을 강제연행, 대공분실에서 구금상태로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는 바,

신귀영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4. 11. 제2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4. 13. 제3회 진술서, 4. 16. 제4회 진술서, 제2회 진술조서, 4. 19. 제5회 진술서, 제3회 진술조서, 4. 20. 제6회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4. 25.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8회 진술서, 제9회 진술서, 4. 26. 제7회 진술서, 4. 2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0회 진술서, 4. 30. 제9회 진술서 등 15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²⁾

서성철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4. 11.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4. 12. 제2회 진술서, 4. 14. 제3회 진술서, 4. 2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4. 25.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6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춘석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4. 12. 제1회 진술서 및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4. 13. 제2회 진술서, 4. 14. 제3회 진술서, 4. 26.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27. 제6회 진술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4. 28.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8회에 걸쳐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였고,

신복영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4. 11.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고, 4. 12. 제2회 진술서, 4. 2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4회에 걸쳐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산시경은 1980. 5. 2. 부산지검에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부산지법으로부터 5. 2. 신복영, 5. 3. 신귀영, 신춘석, 서성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부산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하였다.

부산시경은 자백을 기초로 1980. 5. 7. 신귀영에게 군수기지 사령부, 미 하야리아 부대 등 현장을 돌며 범행을 재연, 5. 9. 서성철에게 군수기지 사령부, 육군병원, 탄약창고, 장산 레이다통신망기지, 근학서점을 돌며 범행을 재연, 5. 10. 신춘석에게 탄약창고, 수영국제공항, 육군기계창, 미 하야리아부대, 육군 제3항만사, 미군수송중대, 육군폐품수집소, 서점에서 범행을 재연시키는 등, 각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1980. 5. 14. 부산시경은 서성철에 대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5. 14. 신춘석에 대하여 자술서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5. 10. 신복영에 대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

2) 수사기록상 작성날짜에 따른 진술서 순서가 맞지 않음.



한 다음, 5. 15.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송○○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³⁾

다. 부산지방법검찰청의 수사

1980. 5. 15. 이 사건이 송치되어 온 당일 부산지검은 피해자 신귀영 등에 대하여 부산시경 의견서를 토대로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자리에서 신귀영, 서성철, 신춘석은 신정린과 신수영이 조총련계라는 점과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신복영은 신귀영이 조총련계 신수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자백을 하였다.

부산지검은 5. 16. 서성철, 5. 17. 신복영, 5. 19. 신춘석, 5. 29. 신복영, 5. 23. 신귀영, 5. 29. 신복영에 대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5. 29. 부산지방법원에 기소(검사 김택수)하였는 바, 공소장 요지는 위 판결요지와 같다.

라. 재판과정

1) 부산지방법원

위 기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1980. 7. 23.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8. 13. 제2차, 8. 27. 제3차, 9. 19. 제4차, 9. 24. 제5차, 9. 29. 제6차 공판을 거쳐 10. 15. 판결을 선고(재판장 부장판사 최종백, 판사 정창환 황영목)하였는 바, 선고 결과는 신귀영, 서성철을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고, 신복영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하되 신복영에 대하여는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2) 대구고등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신귀영, 서성철, 신춘석, 신복영 및 검사가 대구고법에 항소하였고, 대구고법은 3차례 공판을 거쳐 1981. 2. 19. 각 항소를 기각(재판장 부장판사 윤영오, 판사 이동락 이영규)하였다.

3) 대법원

위 판결에 대해 신귀영, 서성철, 신춘석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1981. 6. 23. 상고를 기각(재판장 대법원 판사 김덕주, 대법원 판사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송○○은 이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서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의해 반공법 제5조제1항(회합 통신 등), 동법 제8조(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제5조제1항(자진지원·금품수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 하였음.

마. 1차 재심(1994. 11. 청구)

피해자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1994. 11. 및 1997. 7. 2차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고, 1차는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에서, 2차는 부산지법에서 재심개시 결정되었으나, 각각 대법원과 부산고법에서 뒤집혀 재심은 무산되었다. 각 재판부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법(1995. 7. 24. 결정, 재판장 판사 김태우, 판사 이영갑 박준용)

신수영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공판정에서 신문할 수 없었던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박약한 증거일 개연성이 크고, 신수영이 조총련의 간부가 아니어서 간첩행위 등을 지령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서 기재를 더하면,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수영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2) 부산고법(1995. 8. 31. 결정, 재판장 판사 이공현 판사 서복현 안철상)

신수영의 진술서를 임의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증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그것은 확정판결이 범죄사실을 정당하게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재심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대법원(1995. 11. 8. 결정,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신수영의 진술서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 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부산고법(1997. 9. 3. 결정, 재판장 판사 김문수, 판사 김종기 최호근)

신수영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진술내용의 진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대법원(1998. 2. 25. 결정,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서성)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2차 재심(1999. 7. 청구)

1) 부산지법(2001. 8. 31. 결정, 재판장 판사 서복현, 판사 이민수 변민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의하여 재심개시 결정한다.

2) 부산고법(2002. 7. 19. 결정, 재판장 판사 최진갑, 판사 박종훈 천대엽)

진술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인들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나 민사소송에서 증언만으로 확정판결에서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2004. 6. 10. 결정,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이규홍)

증인들의 각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신문조서 등본은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것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1) 피해자들의 진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귀영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65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고문

등이 심하여 거짓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춘석은 수사기관에서 40일간 고문을 받다가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수사관이 따라와 협박하였기 때문에 시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고, 신복영은 항소이유서에서 2. 27.에 연행되어 5.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65일간 감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신귀영은 “1980. 2. 25. 새벽 부산시경 대공분실 소속 이규홍 경사에게 연행되어 부산진역 앞 구 KBS 방송국 뒤에 위치한 2층 건물에 감금되어, 5. 3.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65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들의 면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 황옥희는 내가 며칠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용호동파출소에 실종되었다고 신고⁴⁾까지 하였다. 처 황옥희도 4. 14.경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끌려와 조사를 받았다”⁵⁾고 진술하였고,

신춘석은 “1980. 3. 24. 부산시 부전역 앞에서 경찰 1명에게 내외문화사 간판이 걸려 있던 2층 건물인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⁶⁾고 진술하였으며,

서성철의 딸 서영실은 “1980년 중학교 3학년생 때 부모인 서성철과 신말영이 이혼한 후 여동생 서지심과 함께 숙부 서성팔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숙부가 ‘배가 들어오자마자 경찰들이 서성철을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⁷⁾고 진술했고,

위 신말영은 “1980. 3. 7. 서성철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성철과 이혼하고 대구백화점 뒷골목 칼국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 1980. 3.경 경찰 2명이 식당으로 찾아와 ‘서성철이 밀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밀수자금을 대준 것으로 되어 있어 조사를 해야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⁸⁾고 진술하였다.

2)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시경 수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수사팀장 이○○ 경위, 김○○·이○○ 경사, 송○○·윤○○ 경장, 박○○ 순경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⁹⁾

4) 파출소 실종신고 관련 문건은 보존연한이 3년으로 이미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

5) 2006. 8. 9. 및 8. 10. 진술청취.

6) 2006. 8. 24. 진술청취.

7) 2006. 9. 14. 진술청취.

8) 2006. 9. 14. 진술청취.

9) 대공분실 수사팀은 피의자별로 수사조를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신귀영은 김○○, 김○○이 서성철은 이○○, 박○○, 신춘석은 송○○, 윤○○, 신복영은 김○○, 윤○○이 1개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경위는 “1980. 4. 초순 신귀영을 제일 먼저 체포하고 조사하여 서성칠, 신춘석, 신복영의 범죄사실을 파악하였고, 신귀영을 연행한 지 3, 4일 후에 서성칠 등을 연행해 왔으며, 영장청구 전 피의자들을 한 달 가량 대공3계(대공분실) 사무실에 구금했다”,¹⁰⁾

이○○ 경사는 “서성칠을 조사할 때 영장발부 이전에는 수도사업소 2층 대공분실 사무실에 구금했다. 서성칠을 최초 연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귀가조치 없이 계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¹¹⁾

박○○ 순경은 “서성칠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이후에는 귀가조치가 불가했을 것이다. 서성칠의 경우 최소한 1980. 4. 22.부터 5. 3.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0여 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¹²⁾

송○○ 경장은 “본인과 윤인석 경장이 신춘석을 사무실과 여관에서 조사를 하였고, 밤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2명의 감시하에 여관에서 재웠다. 범죄사실을 밝혀냈으면 간첩인데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¹³⁾고 진술하여, 대체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구금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였다.

그리고 김○○ 경사는 “당시 대공 사건은 연행되는 순간부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신귀영 사건도 2달 이상 구속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대공분실에서는 중앙정보부의 무슨 내규 비슷한 것에 장기 구속수사를 허용하는 구절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¹⁴⁾고 장기 불법감금 사실을 시인하였다.

3) 수사기록상의 정황

수사기록을 보면 1980. 4. 11. 신귀영은 제2회 진술서에 39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1965. 5.부터 1979. 9.까지 신수영을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다. 위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중 서두부분, 범죄사실 1항 중 신수영을 만난 점, 범죄사실 2항 중 신수영을 만난 점, 범죄사실 3항 서두부분, 범죄사실 4항 일부, 범죄사실 6항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10) 2006. 11. 15. 진술청취.

11) 2006. 11. 17. 진술청취.

12) 2006. 10. 19. 진술청취.

13) 2006. 11. 16. 진술청취.

14) 2006. 10. 12. 진술청취.

4. 11. 서성철은 13쪽 분량의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하여 1967. 7. 하순부터 1968. 11. 초순까지 신정린과 신수영을 만난 일시, 장소, 대화내용, 조총련계로 활동하는 장인 신정린과 사촌처남 신수영은 북한공산당을 위하여 한국의 군사기밀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부산에 와서 군부대 사진도 찍었다는 점 등을 자백하였으며,

4. 12. 신춘석은 제1회 진술서 45쪽을 작성하면서 1963. 3. 신주석을 만나 신정린과 신수영을 만났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4. 11. 신복영은 14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어려서부터의 행적, 한국거주 친인척과 재북가족, 재일 친인척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 다음, 각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서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였는 바, 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출석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복영은 4. 11.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5. 2.까지 20일간, 신귀영 서성철은 4. 11.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5. 3.까지 21일간, 신춘석은 4. 12.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5. 3.까지 20일간 각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기록상 명백하며,

신귀영 등이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을 최초 진술서에서 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자백을 한 다음, 정리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4) 소결

1심 법정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수사관들의 대체적인 불법구금을 시인하는 진술과 2달 이상 구속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한 수사관의 진술, 수사기록상 장기 불법구금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귀영은 1980. 2. 25.에, 서성철은 3. 7.에, 신춘석은 3. 24.에, 신복영은 2. 27.에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67일, 57일, 40일, 64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이 차단된 채 고립된 감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된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¹⁵⁾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15)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

1) 피해자들의 진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귀영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65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고문 등이 심하여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성철은 자신 명의의 각 진술서는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춘석은 수사기관에서 40일간 고문을 받다가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수사관이 따라와 협박하였기 때문에 시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구고법에 제출한 각자 항소이유서에서 신귀영은 “연행된 후부터 6일 동안 고문실에 넣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모진 고문과 폭행을 하면서 벗겨서 눕혀 묶고 코를 막고 물을 먹이는 고문을 수차 당했다. 전기를 이용하여 고문을 가하면서 형사들이 각본을 매일 짜고 매일 회의를 저녁마다 하였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가하여 도저히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 허위 자백을 하였다. 검찰에 송치되어 왔을 때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내쫓았다. 고문한 형사 5명이 검찰청 직원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검사실에 넣어두고 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서성철은 “신수영의 이름도 처음 들으며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으나, 경찰이 잔인한 고문을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였다. 의자에 온 몸을 밧줄로 묶어서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날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을 먹이고 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마구 때리는 등의 고문으로 극심한 통증과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가 되어 우선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신수영을 만났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춘석은 “수사관이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에서 오직 협조를 바란다. 최종 학교와 해군복무 시절의 승선 함정에 대한 이모저모,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군부대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 즉 위치라든가 건물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빠짐없이 적어달라’고 하기에 이를 적자. ‘이 사실 전부가 네가 조총련 신수영에게 전해준 제보’라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그 뒤부터 악랄한 고문을 당했다. 그 무서운 전기고문만 여러 차례 당했다. 20여 일간은 견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신복영은 “1980. 2. 27. 부산시경 외사과에 연행되어 5. 2.까지 65일간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너의 동생이 다 죽어가니, 바른 말을 하고 동생 신병을 인수하여 돌아가라’고 하면서 고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신귀영은 “1980. 2. 25. 부산시경 대공분실 요원들이 연행하여 팬

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긴 후 두꺼운 목재판에 눕히고 천으로 된 끈으로 결박하고,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으로 코를 잡아 숨을 못 쉬게 한 후 입을 벌리고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하였다. 질식할 때면 수사관들이 코를 놓아 숨을 쉬게 하였다가 재차 물을 부었다”, “그 중간에 까무러치면 수사관들이 돌아가며 수십 대씩 경찰 곤봉으로 발바닥을 때려 깨웠다. 곤봉으로 맞은 발바닥이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지경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팬하고 종이를 던져주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적으라고 시켰다”, “신수영으로부터 돈만 받아 썼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니, 욕설을 하면서 구타하고 다시 자술서를 고쳐 쓸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⁶⁾

신춘석은 “전기고문용 의자에 앉아 4~5차례 전기고문을 당했는데, 두 번 의자에 묶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몽둥이로 얼굴부터 시작해서 어깨, 몸통, 손가락, 허벅지, 발바닥까지 구타하지 않는 부위도 없고, 사정도 두지 않았다. 특히, 곤봉을 정강이 앞뺨 부분에 힘주어 대고는 위아래로 왕복하며 몽개낼 때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양쪽 정강이에는 그 때 고문받은 상처가 남아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수사관 3~4명이 와서 우리한테 조사받은 그대로 검찰에서 진술해라, 만일 다르게 얘기하면 경찰에 다시 와서 조사받아야 된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다.¹⁷⁾

2) 참고인들의 진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복영의 처 문복남은 “신호영이 대공분실에서 신귀영과 대면하였을 때 신귀영이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으니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을 전했다. 신호영은 대공분실에 4번 불려갔다 온 후 고문후유증으로 지금도 누워 있다”¹⁸⁾고 증언했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위 신말영(서성철의 처)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 3~4명이 교대로 들어와서 서성철이 근학서점에서 부산시가 지도를 구입하여 도일시 가져갔다는 것을 진술토록 강요받았다”, “어떤 수사관은 발로 걷어차며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줄 텐데 왜 고집을 피우냐’며 답변을 강요했는데, 끝까지 부인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 수사관들이 ‘여기 들어와서 조사받았다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진술했고,¹⁹⁾

16) 2006. 8. 9.~8. 10. 진술청취.

17) 신춘석 진술조서.(2006. 8. 24. 참조)

18) 5차 공판조서(1980. 9. 24.) 문○○에 대한 증인신문.

19) 2006. 9. 14. 서영실, 신말영 각 진술청취.(사건 당시인 1980년 서성철의 딸 서영실은 중학생이었기에, 서성철이 대공분실 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신혁영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네가 가족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니 바른 대로 불라’고 하며 두 발을 묶고 두 손을 묶은 상태에서 막대기를 끼워놓고 양쪽에서 받친 뒤 몸을 돌리기도 하고, 길이 1m 가량의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끼얹기도 하였다”²⁰⁾고 진술했다.

당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송청길은 “수사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몽둥이로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놓고 물고문을 하였다. 당시 수사관들이 몽둥이로 정강이를 눌러 대패 갈 듯이 해서 남은 흉터와 왼쪽 검지에 전기고문을 당한 2cm 가량의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신귀영을 만나 편지 2통을 전해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 불라고 강요를 받아 고문에 못 이겨 시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¹⁾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정도는 1995. 1. 8. 위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경찰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방망이로 구타하려고 하여 겁이 나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박용규는 1999. 1. 28. 부산지법 변론기일에 “살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2~3일간 대공분실에 갇혀 있으면서 전기고문을 당했고, 대공분실에서 나올 때 법정에서 똑같이 증언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왔다”²²⁾고 증언했고, 위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그 당시 신춘석과 함께 탄약부대 및 수영비행장 등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경찰 조사시 고초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위 박용규는 “수사관들이 ‘신춘석이 송정에 있는 탄약고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네가 옆에서 지켜보았지’라면서 대답을 강요했으나 부인했다”, “양쪽 엄지손가락에 무언가를 끼우더니 전기충격을 가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하자 수사관들이 재차 추궁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대공분실로 연행 후 4~5일째 되던 날에 풀려났다. 그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고 추후에 진술한 내용대로 말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수사관들은 차후 각서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불려올 줄 알라고 했다”고 진술했다.²³⁾

2차 재심기록상 인증서에 의하면 위 신호영은 1998. 2. 3.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5~6

사중 고문 등 강압수사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신말영으로부터 진술청취)

20) 2006. 9. 21. 진술청취.

21) 2006. 8. 23. 진술청취.

22) 2차 재심기록상 부산지법 98가단47203 손해배상(기) 증인신문조서등본 참조.

23) 2006. 8. 25. 진술청취, 박용규는 1966. 6월 초순경 신춘석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육군 000탄약창, 수영국제공항 등 사진 촬영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대공분실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음.

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등판 없는 의자에 손과 발이 묶여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코에 수건을 덮고 물을 들이붓는 등 고문을 당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간첩죄로 몰아 넣겠다고 협박을 당해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검찰 및 공판정에 출석할 때는 하루 전날 대공분실 수사관 2명에게 끌려가 대공분실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반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3) 수사관들의 진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당시 수사관 이○○ 경위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에 대해 가혹행위를 행사하거나 목격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 대공분실 사무실 건물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 여건에서 가혹행위를 할 수 없었다”,²⁴⁾

송○○ 경장은 “당시 대공분실 조사실 공간이 협소해 피의자 신춘석의 신문 대부분은 여관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만 대공분실 사무실로 데려가 조서를 받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강압수사는 절대 하지 않았다”,²⁵⁾

이○○ 경사는 “당시 조사할 때 고문 등 강압수사는 없었으며, 서성철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일찍 끝났다. 다른 수사관들이 강압수사를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²⁶⁾

박○○ 순경은 “대공분실 사무실이 민가 주변에 있었는데 고문을 했다 하면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아무리 시대상황이 그랬다 하더라도 대공분실 사무실 주변 정황으로 볼 때 고문을 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²⁷⁾고 하여 각자 고문, 가혹행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김○○ 경사는 “1980년 그 시절은 간첩사건하면 대단히 중한 사건으로 취급되던 때였다. 당시 수사관행상 강압수사를 하는 것은 관례화되어 있었다. 간첩사건 피의자들이 조사실에 들어오면 최소한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 외에도 물고문, 통닭 구이 등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할 때도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수사관들이 몽둥이 구타 등 강압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피의자신문시에 비교적 피의자의 감정을 움직

24) 2006. 11. 15. 진술청취.

25) 2006. 11. 16. 진술청취.

26) 2006. 11. 17. 진술청취.

27) 2006. 10. 19. 진술청취.



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주로 구사했기에 폭력을 쓴다든가 하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도, 몽둥이로 신귀영 등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수건을 얼굴에 덮고 주전자로 물을 뿌리는 물고문도 했던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전기고문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몽둥이 구타, 물고문을 시인했고, 전기고문 개연성을 시사했다.²⁸⁾

4) 수사기록상의 정황

이 사건 수사는 1980년 초에 진행되었으나, 간첩행위 시점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걸쳐 있다. 피해자들은 1980. 2. 25.경부터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록을 보면 1980. 4. 10.까지 피해자들을 조사한 내용이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4. 11. 또는 4. 12.에 이르러 일제히 자세하게 자백하는 내용의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신귀영은 4. 25.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자백, 4. 26. 제7회 진술서에서 다시 범죄사실 내용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자백, 4. 2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죄사실에 관해 보충을 하였고,

서성철은 4. 12. 제2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2, 3, 4, 5, 6, 7, 8항에 대해 차례대로 상세히 자백, 4. 14. 제3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9, 10, 11, 12, 13, 14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자백,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시 차례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신춘석은 4. 14. 제3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1, 2항에 대해서, 4. 15. 제4회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3항에 대해서 자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10년이 넘는 일을 기억하여 그 일시, 장소, 지령, 제보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다는 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상 4. 11.경부터 이례적으로 위 내용들이 자세하게 진술되어 있고,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진술되어 있는 점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5) 소 결

피해자들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허

28) 2006. 10. 12. 진술청취. 김○○ 경사는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 중 자신의 수사능력이 가장 출중했으며, 동 사건 수사시에도 자신이 피의자신문 및 수사방향 설정 등 모든 부분을 조정했다고 진술.

위자백 하였다고 부산지법 공판기일에서부터 진실화해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들까지도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고문 상황이 비교적 유사하고 상세하며,

김○○ 경사는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록상으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10년이 넘는 일을 기억하여 일시, 장소, 대화내용까지 상세하게 순서대로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들이 반복되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부산시경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수사관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부산지검에 서도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된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5.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조총련 간부인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신귀영은 1970년부터 1979년에 걸쳐, 서성철은 1968년부터 1978년에 걸쳐, 신춘석은 1965년부터 1980년에 걸쳐 간첩행위 등을 하였고, 신복영은 1976년부터 1979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건인 바, 확정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신귀영 등의 일부 각 진술
- 증인 박용규, 이○○, 한정도, 신호영, 정종한의 각 진술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의 장○○, 박○○ 한○○, 이○○에 대한 각 진술서
- 경찰의 이○○, 김○○, 한두금에 대한 각 진술조서
- 신귀영 등에 대한 각 검증조서
- 압수된 선원수첩, 여행안내도, 카메라, 가방 1개
- 사진 1장, 국제우편환도착통지서



나. 피해자들의 진술

1) 부산시경 및 부산지검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은 부산시경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어 그 자백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부산지검에 송치되어 온 피해자들은 송치 당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는 바, 이는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심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강압상태가 부산지검 조사에까지 이어졌다고 인정되므로 그 자백 또한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어 그 자백 내용을 믿을 수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각자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이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사건이 병합되어 있으나, 각자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 신복영의 금품수수 및 불고지 또한 별개의 범죄사실이다. 설령 검찰에서의 각자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백이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설령 공범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자백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려면 임의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²⁹⁾

2)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가) 신귀영

- 범죄사실 1, 2, 3항의 나, 6항의 가, 8항에 대하여 부인
- 범죄사실 3항의 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
- 범죄사실 4, 5, 6항의 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
- 범죄사실 7항에 대해서는 한정도를 만난 사실만 인정

나) 서성철

-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신정린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신수영을 만난 사실은 부인
- 신정린이 조총련계인지 의심만 들었다고 진술
- 범죄사실 2, 3, 4, 5, 7, 11, 12, 13항에 대하여 모두 부인

29) 대법원 2004도805(2004. 4. 23) 판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범죄사실 6, 8항에 대하여 일본에 간 사실만 인정, 나머지 부인
- 범죄사실 9항에 대하여 귀국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 범죄사실 10항에 대하여 고베(神戸)항에 간 사실만 인정

다) 신춘석

-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 신정린 집을 방문하였으나, 신수영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
-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친형 신용석이 보낸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
- 위 신용석이 조총련계에게 가담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라) 신복영

-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
-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신귀영이 신수영을 만났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이상과 같이 신귀영 등은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점과 간첩행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고, 서성칠 및 신춘석은 공판 당시까지 신수영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판결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이○○, 김○○, 한○○에 대한 진술서 및 증인 박용규, 이○○, 한정도, 신호영, 정○○의 증언을 증거로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진술

부산시경에서 이소연(신춘석의 처)은 1980. 4. 20. “신춘석이 방일시 친형 신주석, 사촌형 신정린 등을 만난 점”, 4. 28. 제2회 진술조서에서 “신주석이 약 18년 전 한국에 나오면서 카메라를 선물, 65년경 신춘석이 카메라를 구입한 점”, 4. 30. 제3회 진술조서에서 “약 15년 전 신춘석이 마산호를 타고 일본 갔을 때 사진기를 하나 구입해 와 가족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후 신춘석이 친구들과 사진기를 들고 야외로 나간 것이 한 두 번 있었던 점”, 5. 8. 제4회 진술조서에서 “재일 신용석이 조총련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나, 신춘석의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김장화(신춘석의 초등학교 2년 후배)는 1980. 4. 26. “동명사진관을 운영하는 고종 6촌형 박용규로부터 신춘석이 카메라를 팔려고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춘석의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며,

한두금(신춘석의 母)은 1980. 5. 6. ”1976. 6.경 재일 신용석이 일하는 회사의 일본인 사장 방한시 한두금이 반지, 전자계산기, 라이터, 일본술, 돈 1만 원 등을 전달받고 식사한 후 사진촬영하여 재일 신용석에게 발송한 점, 그 후 신용석이 송금한 돈을 우체국에서 찾아 쓴 점”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부산지검에서 장○○(서성철이 승선한 ○○○호 선장)는 1980. 5. 24. “서성철이 일본 입항시 신정린 및 신수영 등을 접촉한 점, 자신도 동행했으나 이들이 민단인 줄로만 알았다는 점”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약 17년간 외항선 기관장 등으로 선원생활을 한 신춘석의 외조카)은 1980. 5. 28. ”1976. 7. 중순 신춘석으로부터 방일시 신용석을 만나보도록 권유받고 1976. 12. 신용석가를 방문하였으며, 신용석은 북한을 선전하고, 일본에 거주하며 파친코 일을 거들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3만 엔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산지법 1980. 8. 13. 공판기일에 이○○은 ”1976. 7.경 신춘석이 일본에 가면 외삼촌인 신용석을 한번 만나 보라고 하였다. 증인이 일본에 갔을 때 증인의 배의 통신국장, 선장과 함께 신용석을 만났다. 신용석은 이북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등 이북을 찬양하는 말을 늘어놓기에 증인은 외삼촌을 나무랐다”고 증언하였으나, 모두 이 사건 간첩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2) 근학서점의 소재지 관련 진술

공소장 및 판결은 “서성철이 1972. 4. 광복동 1가 15번지 근학서점에서 부산항만시설 지도가 첨부된 책 등을 구입한 후 신수영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정종한은 부산지법 1980. 9. 29. 공판기일에 근학서점 개업일자가 1975. 1. 1.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이전에는 노점 비슷하여 세무서 장부에 오르지 못했다. 처음에는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1번지에서 개업했다가 1974. 5.부터 12.까지 광복동 1가 15번지에서 서점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정종한은 “1971. 6. 14.에 동광동 2가 11번지로 전입하면서 서점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노점 비슷하게 영업을 시작했다. 1~2년 후에 길 건너 동광동 1가 5번지로 자리를 옮겨 영업했으며, 1975. 1. 1.에 5m 정도 떨어져 있던 중구 광복동 1가 15번지로 이전해서 개업했다. 부산항만시설 지도 판매에 대하여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³⁰⁾ 1972. 4. 초순경에는 근학서점 소재지가 동광동 2가 11번지였는

데, 판결이 광복동 1가 15번지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3) 기장-송정간 버스운행 관련 진술반복

판결은 “신춘석이 1966. 6. 동명사진관 주인 박용규를 대동, 육군 탄약창고 건물, 부산 소재 군부대 등을 촬영하여 동년 7. 신수영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박용규는 1980. 5. 26. 부산시경에서 “1966. 6. 초순경 동창 신춘석의 부탁으로 버스편으로 이동하며 탄약창, 수영비행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촬영을 도와주고 이후 필름을 현상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8. 13.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신춘석이가 용호동 탄약창이 있는 산을 촬영하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수영삼거리 지점에서 뒷산을 배경으로 넣어서 자기의 기념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하기에 찍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공분실에 간혀 있으면서 전기고문을 당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위 진술 및 증언을 반복하였다.

재심기록상 부산직할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경상남도지사의 회신에 의하면 위 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된 시기는 1970년도 무렵이어서 1966. 6.경 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부산시경에서 김정하는 1966. 6.경 좌천-기장-송정간을 1일 10회 16인승 마이크로합승 버스 2대와 기장-송정간 1일 6회 16인승 마이크로버스 1대가 매시간 운행하였고, 1966년을 전후하여 1인승, 15인승, 16인승 마이크로버스업자들이 무허가로 기장-송정간을 운행하던 버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³¹⁾

경남 양산군 기장면장 최원구도 1980. 9. 3. 부산시경에서 “1964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기장에서 송정까지 마이크로버스가 운행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위 김정하는 “1980년 경찰들이 찾아와 1966년경에 신흥교통을 운영했던 사실을 배경으로 1966년 당시 신흥교통이 부산 기장-송정, 기장-대변, 기장-죽성 각 구간에서 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요구했다. 기장-대변, 기장-죽성, 기장-좌천, 기장-월래 구간에서 버스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기장-송정간에는 버스운행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첩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었다. 기장-송정간은 5~6인승 택시들만이 운송사업인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마이크로버스가 운행된 사실은 전혀 없다.

30) 참고인(정종한) 진술조서(2006. 9. 20.자) 참조.

31) 1980. 9. 20.자 김정하 진술조서.



경찰들이 먼저 확인서 초안을 가져와 그대로 베껴 확인서를 써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³²⁾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³³⁾라고 진술했고,

위 최원구는 “1980. 9. 3. 대공분실에서 작성, 제공했던 확인서는 내 필체가 아니고 기장 면장 직인 또한 대외공문 발송시 사용하는 직인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직인으로 보인다. 1966. 6.경 기장에서 출발하여 송정 방향으로 운행하는 승차인원 7~8명의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버스가 송정까지 도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정에서 ‘1960년대에 기장에서 출발하여 송정 방향으로 향하는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다’고 막연히 답변했던 것으로만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당시 기장-송정간 버스운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참고인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는 바, 검찰과 법원은 조작된 부산시경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4) 고리원자력발전소 관련 진술반복

한정도는 1980. 5. 27. 부산시경에서 “1979. 5.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 부산 지점 뒷길에서 신귀영을 우연히 만나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8. 13. 부산지법 공판기일에 “1979년 봄 우연히 신귀영을 만나 잠시 대화한 일이 있다. 증인의 직업을 묻기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한다고 하였더니 그 발전소의 출력, 규모 등을 묻기에 지나가는 말로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방망이로 구타하려고 하여 겁이 나서 시인하였다”고 위 진술 및 증언을 반복하였는바, 부산시경은 참고인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였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5) 밀항권유 관련 진술반복

공소장 및 판결은 신수영이 1976. 10. 신귀영에게 호영이를 데리고 오라고 지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신호영은 1980. 5. 8. 부산시경에서 “재일 사촌형 신수영, 백부 신정린 등은 조총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촌형 신귀영은 외항선원으로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이들과 교류하고 있고, 신귀영이 1977. 9. 하순경 추석날 점심 때쯤 본가에서 명절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32) 확인서 내용은 1961. 5. 16. 군사쿠데타 이후부터 1968. 9.까지 기장에서 송정간, 기장에서 대변, 죽성간에 소형 15인승 마이크로버스가 운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2006. 9. 21. 진술청취.

‘재일 신수영이 돈을 대줄 테니 밀항하여 일본으로 오라’고 했던 말을 전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였고, 부산지법 1980. 8. 13. 공판기일에 신호영은 “1977년도 추석에 신귀영이가 증인을 보고 일본에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에 돈이 있어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하였더니 일본에 가면 신수영이가 돈을 대어 줄 것이라고 하기에 밀항을 해서는 일본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신호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몽둥이로 구타와 물고문을 당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고, 검찰 및 공판정에 출석할 때는 하루 전날 대공분실 수사관 2명에게 끌려가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반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 바, 간접적 증거에 불과함에도 부산시경은 참고인에게까지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라. 부산시경의 검증조서

판결은 부산시경이 행한 신귀영 등에 대한 검증조서를 증거로 들고 있는 바,³⁴⁾ 피해자들이 대공분실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강압수사를 받아 간첩 행위 등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자백에 따라 현장에서 재연한 검증조서는 피해자들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마. 압수물 등

판결은 압수된 선원수첩, 여행안내도, 카메라, 가방, 사진, 국제우편환도착통지서 등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 것은 간첩행위에 대한 뒷받침 자료로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것을 증거로 거론하고 있다.

바. 기타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1) 신수영의 지위

가) 문제의 소재

범죄사실은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하에서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4) 대법원 2003도6548(2006. 1. 13.) 판결.



나) 중정의 조총련 인물록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수사착수의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 1975. 6. 중정 발행 조총련 인물록 943쪽 및 953쪽에 신수영 및 동인의 숙부 신정린에 관한 기록 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신수영이 1968. 7. 총련 아이찌(愛知)현 나카가와(中川)지부 위원장으로, 신정린은 1960년 총련 간부, 1968. 7. 총련 아이찌현 본부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공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가 국가정보원에 위 조총련 인물록의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다) 부산시경의 사실조사

치안본부장이 1979. 7. 부산시경에 회신한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정린이 조총련 동춘지부 소속 본회원으로 조직활동을 한 바 있으나 현재는 노환으로 표면 활동을 않고 있으며, 신수영은 소재 불명으로 조사불능 상태”라는 것인 바,³⁵⁾ 신정린은 조총련 회원이라는 것이고 신수영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신수영의 진술

신수영은 2003. 9. 18. 부산지법 민사소송 변론기일에³⁶⁾ “조총련 간부직을 맡은 적이 없다. 증인의 장인이 조총련에서 지부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나 증인의 처 역시 조총련 간부직을 맡은 적이 없다. 숙부 신정린도 조총련 간부를 맡은 적이 없다. 증인은 1987년 입북한 적이 있으나, 신귀영에게 입북권유한 사실이 없다. 신귀영에게 간첩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 신호영이 누군지 모른다. 조선노동당 가입사실이 없다. 4촌매제인 서성철을 만난 적도 없다. 신춘석은 이번에 국내 입국시 처음 상면하였고, 신춘석의 형 신주석, 신용석은 민단계이다”, “1980년 형사재판 중 국내입국을 고려해 보았으나, 일본의 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입국하면 구속되어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을 포기했다”고 증언했고,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조총련에 가입하여 조선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사상이나 이념 등의 이유가 아니라 1960~70년대 일본에서는 재일교포가 조총련에 가입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귀영이 1965. 4.경~1979.경 일본에

35) 대일 사실조사 결과 하달.(정이 2061-006839, 1979. 7. 21. 자, 치안본부장)

36) 부산지법 98가단47203 손해배상.(기)

입항했을 때 총 7~8회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가난한 선원인 동생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위 증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³⁷⁾

마) 조총련 관련 기록

신수영은 1946. 1.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찌(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거주하다가 1968. 8.경부터 현재까지 지바(千葉)현 지바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진실화해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조총련 아이찌현 나고야시 나카가와(中川)지부는 2006. 12. 25.자 회신에서 당시 조직에 관한 자료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1968년 당시 조직 간부들의 증언을 기초로 신수영이 지부장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³⁸⁾

조총련 지바현 지바지부는 2006. 12. 14.자 회신에서 신수영은 회원으로서 생활을 해왔으나 조총련 지바지부 산하 단체들에 전임, 비전임을 비롯하여 일체 간부직책에 등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차 재심기록상 1975. 11. 중정 발행 『조총련』의 조총련 간부 명단에 신수영, 신정린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재심기록상 민단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면 신주석은 1980. 10. 11. 민단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이상과 같이 어느 시기에도 신정린, 신수영은 조총련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신주석과 신용석은 민단체였다.

2) 전화번호부 배포처

공소장 및 확정판결은 “신귀영이 부산우체국에서 1976년도 부산시 전화번호부를 입수하였다”라고 인정하였으나, 1차 재심기록상 부산우체국장의 회보에 의하면 당시에는 전화번호부를 우체국이 아닌 관할 전화국에서 배포하였다.

3) 화영호 전소

공소장 및 판결은 “신귀영이 1971. 1. 27.경 화영호 편으로 부산항에 입항 귀국하여 잠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신귀영은 부산시경 제2회 진술서 및 부산지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화재로 화영호가 전소하여 몸만 구조되어 도쿄에서 비행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재심재판 기록상 1971년도 해난심판원 재결록에 의하면

37) 2006. 8. 3. 진술청취.

38) 일본 愛知縣 名古屋市 中川支部 위원장 강일진이 2005. 12. 30. 신귀영에게 발행해 준 증명서에 의하면 ‘귀하께서 요청하신 1966~1968년 사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愛知縣 본부 中川支部 위원장의 역직을 맡아하신 분은 김창선 씨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화영호가 1971. 1. 26. 북양어장 항행중 화재로 전소하였다“는 것인 바, 화재로 전소한 화영호가 부산항으로 입항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4) 기타 범죄사실의 모순점

공소장 및 판결에 의하면 신귀영이 친형 신수영을 만나 지령을 받고, 서성철은 장인 신정린가에서 신수영을 만나 지령을 받고, 신춘석은 친형 신주석가에서 신수영을 만나 지령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주석은 민단계인데 그의 집에서 신수영이 신춘석에게 간첩지령을 하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점,

신수영이 1970. 12. 신귀영에게 부대촬영 필름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4년 후인 1974. 5.이 되어서야 필름을 받으며, 신춘석으로부터 1964.9. 부산시가 지도를 받고서도 서성철에게 1969. 9. 부산시가 지도, 항만시설 지도, 전화번호부 등 입수 지령을 하고, 2년 후 또다시 1971. 5. 부산시가지도, 조선지도 등을 수집지령을 하였으며, 1972. 4. 이를 수령하고 또다시 1974. 10. 신귀영에게 부산시가 지도, 전화번호부 입수지령을 하고 2년 후 1976. 10. 이를 받으며,

또 다시 1973. 8. 서성철에게 부산시 전화번호부 입수지령을 하고, 3년 후 1976. 2. 1973년도 부산시 전화번호부를 받는 등 부산시가 지도 수집지령 및 제공이 3차례, 전화번호부 수집지령 및 제공이 2차례이고, 지령을 한 후 수년 후에 수령하였다는 것이나, 그 일련의 간첩행위가 반복적이며 조잡하다는 점,

신귀영이 신수영가에서 백지에 입당원서(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보증인 : 신수영, 신용석)를 작성하고 신수영으로부터 당증번호 102번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나, 신수영은 당원도 아니었고, 신용석은 민단계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용들을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짜맞추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사. 소결

피해자들은 부산시경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했고, 부산지검에 송치되어 온 당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였으나, 부산지법에 이르러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는 바,

피해자들이 부산시경에서 한 자백은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의해서,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은 강압상태가 이어진 것이어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들도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며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압수물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검증조서는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진술 및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순점들은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반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범죄사실이 부존재하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었는바,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유죄로 처벌한 위법이 있다.

VI. 결론

1. 진실규명

부산시경은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재일 신수영과 신정린이 조총련 간부라고 단정하고 한국에 사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 내사(內査)를 벌였으며,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工作計劃)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에 착수(着手)하여 불법연행하였는바, 이는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체포죄를 구성한다.

부산시경은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39일 내지 67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의 접견이 차단된 채 고립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造作)한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들 인권유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부산시경에서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은, 부산시경에서의 자백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사절차만을 거친 채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저버린 처사(處事)이다.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어 허위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보강증거도 없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구고법 및 대법원 또한 상소를 각 기각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재심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2차 재심청구에 대하여 부산고법과 대법원이 종전의 입장에서 하급심의 재심개시 결정을 2차례 뒤집은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9년에서 15년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한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저버린 처사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2. 권 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